

아시아

◆ 중국, 조세제도 개혁 적극 추진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경제체제를 더욱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조세제도 개혁 작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조세제도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줄곧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해외차입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선호하였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1994년부터 FDI는 매년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괄목할만한 유치실적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경제 체제가 한층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다음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 생산자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

증치세(부가가치세)의 생산자 부담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동안 재정지출과 국채발행 등에 의존했던 내수확대를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부채 증가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국채발행¹⁾을 축소한다는 목적도 저변에 깔린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소득세, 내·외국인 차별 폐지

WTO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책을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표 1〉 중국의 FDI 유치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FDI 유입액	275	338	375	417	453	455	403	407	468

자료: 중국통계연감.

1) 중국 정부는 최근 4년 간 5,100억 위안(616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여 국유기업 구조조정, 서부 대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 불안에 따른 내수확대에 중점을 둬으로써 1998년 이후 7~8% 수준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부채 증가를 피하기 위해 향후 국채발행 보다는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현행 기업소득세 우대조치의 주요 내용

업 종 별	감 면 기 간 ^{주)}
1. 생산활동 종사기업(기본 감면기간)	- 1~2년: 면제 - 3~5년: 50% 감면
2. 첨단기술기업(계속적인 정부인가 필요)	- 1~2년: 면제 - 3~5년: 50% 감면 - 6~8년: 50% 감면
3. 수출기업(생산제품 70% 이상 수출)	
4. 비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 500만 달러, 금융기관 1,000만 달러 이상, 단 서비스업 제외	- 1년: 면제 - 2~3년: 50% 감면
5. 항구·부두 건설기업으로 경영기간 15년 이상 기업	- 1~5년: 면제 - 6~10년: 50% 감면
6. 농업·임업·목축업 종사기업 및 낙후된 변경 지역 투자기업	- 1~2년: 면제 - 3~5년: 50% 감면 - 향후 10년 이내에서 관계기관 인가후 15~30% 감면

주: 사업기간 10년 이상 기업, 이익발생 연도부터 가능함.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협작부.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표2〉, 〈표3〉 참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국 내자기업들은 기업 소득세 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중국의 내·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3% 포함)로 동일하지만,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중·서

부 지역 등 지역별, 그리고 농업, 인프라 등 업종별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 누적기준으로 이익발생 연도부터 2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등의 세제사 우대조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실질적인 기업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낮은 편이다. 향후 내·외자기업간 동

〈표 3〉 개발구별 기업소득세 우대 내용

		전국 공통	경제 특구	국 가 급			개발도시 및 지역 (沿海, 沿江, 内陆, 변경), 省급 경제 기술개발구
				경제 기술 개발구	보 세 구	변경경제 합작구	
기 업 소 특 정 세 산 업 율	1. 생산활동종사기업	30	15	15	15	24	24
	2. 비생산활동 종사기업	30	15	30	30	30	30
	3. ① 지식·기술집약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며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인 사업	30	15	15	15	15	15
	② 에너지·교통·항구 사업 및 국가가 특별히 인가한 장려사업	15	15	15	15	15	15
	③ 규정에 의한 우대기간 만료후 생산제품 70% 이상 수출기업	15	10	10	10	12	12
4. ④ 금융기관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며 사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30	15	15	15	15	15	
	4. 지방소득세	3	1.5	1.5	1.5	2.4	2.4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협작부.

등한 대우 방향으로 세계개편이 예상된다. 한편 이미 2001년부터 내·외자기업에 동등한 세계상의 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로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2001~2010년)으로 15%의 기업소득세율이 부과된다.²⁾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의 세율 적용

현행 세법상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한 증치세는 환급대상이나, 환급실적 및 시기는 지역별, 내·외자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현행 환급절차는 원·부자재 수입 또는 제품 수출시 증치세를 납부하고, 수출면장과 수출대전 입금증빙을 첨부하여 세관과 세무국에 관련 내용의 확인을 거쳐 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규정

상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³⁾ 그러나 환급재원 부족으로 환급이 4~5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된 증치세는 국고로 귀속되고, 환급은 배정된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여 환급이 신속하게 전액 이행됨으로써 영세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관세 조치로 수입증가 억제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폐지에 따른 수입증대를 보호관세 조치로 억제한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점진적인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⁴⁾ 이렇게 될 경우 무분별한 수입증대로

〈표 4〉 증치세율 및 환급율

기본세율	0%	물품 수출시
	13%	곡물, 식용유, 수도, 난방·냉방·액화석유·천연메탄가스,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등
	17%	나머지 모든 재화 및 용역
환급율 ^{주)}	5%	농산물
	13%	농업용 기계, 운동용구, 시계, 고무제품, 신발, 도자기, 유기·무기화학원료, 염료, 도료, 안료, 강재, 시멘트, 알루미늄, 납, 아연 등
	15%	방직품 원·부자재, 17%로 환급하지 않는 기타 기계류 등
	16%	선박
	17%	의류,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기, 계측기기 등

주: 1999년 7월 이후 환급율임.

- 2) 1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장려 분야와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비교우위산업 목록'에서 규정한 산업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주된 사업 매출이 기업 총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내자기업으로서 '현재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 발전시키는 산업, 상품, 기술 목록(2000년 수정)'에서 규정된 산업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주 사업의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해당됨.
- 3) 수출 증치세 환급 관리방법 제25조에 명시됨.
- 4) 중국은 2001년 1월부터 평균 관세율을 종전의 15.3%에서 12%로 인하·운용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0%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며, 공산품의 경우 9.4%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쿼터와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 장벽은 2005년까지 철폐기로 하였음. 다만,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2~3년 늦게 철폐기로 하였음.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종량세, 수출입 조절세 또는 반덤핑, 반보조금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에 대한 조세 입법권 부여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에 조세통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省)정부 공통으로 귀속되는 세목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조세 통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분적인 조세 입법권 및 감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 격화 예상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정부의 세계개편이 시행되면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 정비의 가속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도 병행하여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조세 입법권과 감면권을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에 조세 입법권과 감면권이 부여되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2>, <표3>과 같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상 우대조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센티브 외에 소프트웨어·집적회로 등 특정 산업 중심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세 입법권과 감면권이 지방정부에 부여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金 周 永】